

##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감액권에 관한 고찰\*

하강현\*\*

- 
- I. 서 언
  - II. 대금감액조항 및 관련사례
  - III. 선행적 이행의무 및 관련사례
  - IV. 다른 구제권과의 관계 및 관련사례
  - V. 요약 및 결어
- 

주제어 : 대금감액권, 손해배상청구, 물품검사의무, 불일치통지의무

### I. 서 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물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그 감액하는 비율은 계약 대금이 아닌, 인도시 그 물품이 지니고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감액해야 하므로,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제물품매매법<sup>1)</sup>에서는 제50조에서 매수인의

\* 본 논문은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e-Mail : khha@ysu.ac.kr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 또는 국제물품매매법이라 약칭한다. 본고에서 범명 표기없이 조항만 표기된 것은 전부 CISG(국제물품매매법)를 의미한다.

대금감액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도시’가 지니는 의미도 위험이전시기로서의 인도시기와는 사뭇 다르게 해석된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 등 과도 실무적 적용상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물품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물품검사 및 불일치통지의무를 선행적으로 이행하여야만 동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권뿐만 아니라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하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대금감액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은 종종 자신의 하자를 보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충돌하기도 한다. 또한 매수인 스스로도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물품재매각권 등과 연계되어 혼란을 겪기도 한다. 그동안 CISG상의 대금감액권에 논점을 두고 연구한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송수련<sup>2)</sup>은 손해배상과 대금감액과의 관계를 중국중재판정 사례를 통하여 연구하였고, 최명국<sup>3)</sup>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선택문제를 연구하였으며, 김진우<sup>4)</sup>와 이수빈<sup>5)</sup>은 대금감액권에 관하여 법리적 접근방식으로 연구하였다. 동 권리는 단일조항으로 비교적 간단히 규정되어 있지만, 선행적 이행과 연계된 조항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본 조항 및 선행 또는 관계조항과의 관련성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자들이 동 권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대금감액조항 및 관련 사례

### 1. 대금감액조항

#### 1) 규정내용

매수인의 대금감액권과 관련하여, 제50조에서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실제로 인도된

2) 송수련, “CISG상 손해배상과 대금감액의 관계에 관한 중국 CIETAC의 중재사례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8, pp. 133~158.

3) 최명국, “CISG에서의 피해당사자의 구제방안 선택문제 :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1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9. 2, pp. 201~225.

4) 김진우, “국제물품거래에서의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50조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8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9.7, pp. 49~72.

5) 이수빈, “UN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매수인의 대금감액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제37조(인도기일전의 매도인의 보완권) 또는 제48조(인도기일후의 매도인의 보완권)에 따라 그 의무의 어떠한 불이행을 보완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그러한 조항들에 따른 매도인의 이행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sup>6)</sup>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물품불일치를 벗어나는 영역에까지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금의 감액은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당해 금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약대금 산정방식은 아래 주석의 대금감액 공식<sup>7)</sup>을 참조하기 바란다.<sup>8)</sup> 여기에서는 ‘인도시’(at the time of delivery)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보편적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Incoterms<sup>9)</sup>상의 11개 조건별 인도시기와 동 조에서 말하는 ‘인도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독일법원의 어느 한 판결<sup>10)</sup>에서는 제50조상의 ‘인도시’의 의미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매수인이 이용 가능할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Ex factory조건으로 인도되었더라도 ‘물품이 매수인의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 인도된다는 것’이다. ‘인도시의 가액’ 기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계약체결시와 물품인도시의 가액은 변하기 마련이고, 특히 장거리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변동은 더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권을 사용하는 것과 손해배상청구권(제74-78조)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인도시의 물품가격이 상승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가

6) 물품부적합, 물품불일치, 물품의 하자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불일치’라 칭한다.

7) 
$$\frac{\text{감액금액}}{\text{계약금액}} = \frac{\text{인도시의 불일치품 가액}}{\text{가상의 일치품 가액}}$$

$$\text{감액금액} = \frac{\text{인도시의 불일치품 가액} \times \text{계약금액}}{\text{가상의 일치품 가액}}$$

8) Kroll S., Mistelis L., Viscasillas P.P.,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Hart Publishing, 2011, pp. 758~759 ; Schlechtriem P., Schwenzl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600 ; Bianca, C.M. & Bonell, M.J.,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è-Milan, 1987, pp. 371~372 참조.

9)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0) : 약칭 Incoterms).

10) CLOUT Case 724 : Germany : Oberlandesgericht Koblenz 2 U 923/06, 14 December 2006 : A/CN.9/SER.C/ABSTRACTS/68.

령 계약시의 가격이 100이었고 인도시의 가격이 150이지만 품질이 20% 낮은 경우, 매수인은 감액할 대금이 없게 된다. 그러나 두 가격이 반대인 경우라면 매수인은 70의 대금감액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인도시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대금감액권을 사용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물론 물품자체의 손해를 두고 대금감액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품의 불일치로 인하여 조업중단 등 결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자체의 손해는 대금감액권을,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sup>11)</sup> 물론 두 손해액 전부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민법에서도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와 “목적물의 수량부족이나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제574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대금감액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PICC<sup>12)</sup>에서는 상계조항을 통해 대금감액권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PICC 제8.1조 제1항에서는 “쌍방이 서로 금전채무 기타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3)</sup> UCC<sup>14)</sup> 제2-717조에서도 “매수인은 그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계약위반에 기인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계약하의 그의 미지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금감액권을 인정하고 있다.

## 2) 관련 문제

대금감액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대금감액 비율을 인도시의 가액비율이 아닌 물품의 생산성비율 등 양당사자가 별도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둘째, 매수인이 한번 대금을 감액하고 난 후, 추가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11) Honnold J.o., (Edited and Updated by Flechtner H.M),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pp. 446~448.

12)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0, 이하 ‘PICC’라 칭함. PICC는 CISG를 해석 또는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즉 PICC는 CISG의 ‘Gap Filler’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Zeller B,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217-218. PICC는 CISG와 같이 적용 가능한 국가의 상인에게 적용(직접적용 및 간접적용 : 제1조)되는 당사자가 PICC를 당해계약의 준거법으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Letterman G.G., *UNIDROIT's Rules in Practice : Standard International Contracts and Applicable Rul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 17).

13) PICC에서는 제8장에 상계에 관하여 5개의 조항으로서 그 요건, 통지, 내용 및 효과 등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4) Uniform Commercial Code(미국통일상법전)

의문이 간다.

셋째, 매수인이 물품의 수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대금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진다. 즉 수리비용도 물품자체의 손해액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관련사례

### 1) 대금감액 비율을 장비의 생산성비율로 약정한 경우<sup>15)</sup>

#### (1) 사건개요

체코의 매도인은 중고 파스타 자동생산라인을 러시아의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매도인은 ‘동 생산라인이 고품질의 파스타를 생산하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주었다. 또한 계약서에는 “10%이상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물품대금을 감액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동 장비가 설치된 후 매수인이 파스타를 제조해본 결과, 계약서 및 보증서의 내용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발견하고, 기 지급된 물품대금 중 대금감액분을 매도인이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 (2) 판정내용

중재법정이 위임한 전문가가 동 장비를 검사한 결과, “동 장비는 보증서의 보증 내용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하였고, 중재법정은 매도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금감액분을 반환’하도록 판정하였다.

#### (3) 판정의의

국제물품매매에서 대금감액의 비율은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와 같이 당사자 간에 다른 특정한 기준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대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 이것도 계약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

15) CLOUT Case 1,365 : Russian Federation : Federal Arbitration Court of the North Caucasus Area, Krasnodar, No. A63-4588/2010, 3 October 2011 : A/CN.9/SER.C/ABSTRACTS/145.

## 2) 대금감액후 추가로 대금감액을 요구한 경우<sup>16)</sup>

### (1) 사건개요

독일의 매도인은 비디오레코더 8,000대를 스위스의 매도인에게 인도하였다.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은 “4,000대의 레코더에 품질불일치가 있어 대금을 감액 하겠다”라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후 매수인은 “그 4,000대의 레코더에 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적 대금감액을 요구하였다. 또한 “남은 4,000대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을 감액하겠다’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추가적 대금감액을 거절하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독일법원에 제기하였다.

### (2) 판결내용

독일법원은 매수인이 “4,000대에 추가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처음 대금감액을 요구할 때 이미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후에 추가로 감액 하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남은 4,000대에도 하자가 있어 수리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제40조의 ‘매도인의 악의’의 조항은 반대의 경우로 매수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3) 판결의의

추가로 대금감액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처음 대금감액을 요구할 때 알고 있었던 물품불일치를 근거로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불일치가 발견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처음 대금감액을 요구할 때 이미 알 수밖에 없었던 불일치를 근거로, 추가적 대금감액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불일치가 발견되어야만 추가감액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3) 수리비용이 감액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의 여부

### (A) 불인정된 경우<sup>17)</sup>

#### (1) 사건개요

스위스의 매수인은 이태리의 가구 도매업자로부터 가구를 수입하였지만, 품질에

16) CLOUT Case 343 : Germany : Landgericht Darmstadt; 10 O 72/00, 9 May 2000 : A/CN.9/SER.C/ABSTRACTS/32.

17) CLOUT Case 56 : Switzerland, Canton of Ticino : Pretore della giurisdizione di Locarno Campagna, 27 April 1992 : A/CN.9/SER.C/ABSTRACTS/123.

불일치가 있어,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하면서 하자보완(수리)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매도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부하였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스위스법원에 제기하였다. 매수인은 물품대금의 감액을 청구하였다.

(2) 판결내용

스위스법원은 본 사건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적법한 수리요청을 거부하였으므로 “매수인에게 대금감액권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하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수리비용을 감액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지만, 제50조는 “수리비용의 원상회복을 위해 입안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스위스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또한 “대금감액권은 물품자체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권리”라고 추가 설명하였다.

(3) 판결의의

이와 같이 본 조항은 매수인에게 하자있는 물품의 수리비용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입안된 것은 아니다. 본 사건에서의 매수인은 수입한 가구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재매각하였지만, 재매각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통지를 한 바 없기 때문에,<sup>18)</sup> 재매각분에 대하여는 대금감액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재매각가격은 물품인도시의 가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B) 인정된 경우<sup>19)</sup>

(1) 사건개요

우크라이나의 매수인은 이태리의 매도인으로부터 기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물품의 인도 및 설치의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기계는 기술적으로나 품질면에서 표준에 못미쳤고 또한 운전상의 하자도 발견되었다. 이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였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2) 판정내용

이태리 중재법정은 본 사건에서의 “물품의 불일치는 심각하기는 하나,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매수인이 선택적 대안으로 제시한 대

18) 제88조에서는 재매각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매각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 CLOUT Case 1,190 : Italy : Arbitral Tribunal - Chamber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of Milan, 30 July 2007 : A/CN.9/SER.C/ABSTRACTS/123.

금감액과 관련하여서는 “매수인이 부담한 수리비용 및 기타비용에 대한 대금감액 권을 인정한다”라고 판정하였다.

### (3) 판정의의

감액대금의 산정은 ‘물품인도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완제품이 아닌 기계나 장비 등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수리하는 비용을 근거자료로 하여, 감액할 대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sup>20)</sup> 만일 기계를 재매각하였다면 재매각가격이 감액할 대금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선행적 이행의무 및 관련사례

### 1. 선행적 이행의무

#### 1) 규정내용

매수인이 대금감액권을 사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선행적 이행의무가 필요하다. 물품검사의무와 불일치통지의무가 그것이다.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검사해야만 알 수 있을 것이고, 만일 물품검사에서 계약에 불일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라면, 매수인은 그 내용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만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품의 검사시기와 관련하여 제38조 제1항에서는 「매수인은 그 사장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내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물품이 검사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물품 도착 후 물품의 검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1)</sup>

20) 가령, 기계의 가격은 100이고 인도된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인도시의 가액을 산정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10의 수리비용으로 정상작동이 되는 경우, 인도시의 가액은 90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제50조가 수리비용의 회복을 목적으로 입안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계나 장비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이 감액대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되기 마련이다.

21) “물품검사시간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그 판례도 다양하다. 8일간의 검사기간이 불인정된 경우도 있지만, 14일간의 검사기간, 더 나아가 4주간의 검사기간이 인정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화훼의 매매라면, 3일간의 시간도 너무 긴 시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기간은 거래물품의 종류 등 ‘상황에 따라’(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정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르는 위험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계약서상에 물품검사기간 ---days, 불



물론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검사는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로 연기된다. ‘물품검사’에서 물품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불일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제1항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였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불일치의 내용을 명세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불일치통지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핵심요건은 “불일치의 내용을 명세하여 통지”해야 하는 것과 “합리적인 기간내에 통지”하는 것이다. 전자는 불일치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불일치의 통지를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매수인이 물품검사를 하지 않거나, 하였다하더라도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지 아니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구제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불일치의 통지를 너무 늦게 이행하여 구제권 행사에 실패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sup>22)</sup> 하지만 이러한 불일치 통지시기의 제한 규정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CISG 제40조에서는 매도인의 악의가 있는 경우 즉, ① 매도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는 경우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과 관련이 있는

---

일치통지기간 ---days, 아니면 물품검사 및 불일치통지기간 within ---days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lechtner H. M., Brand R. A., Walter M. S.,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452~453).

- 22) 불일치 통지의 시기를 규율하는 ‘합리적인 기간’은 당해 거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실의 문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합리적인 기간을 판시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태리의 매도인과 독일의 매수인간의 의류매매에서는 물품을 인도한 후 ‘25일후’에 불일치 통지를 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고, 매도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독일의 한 판결에서는 ‘합리적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태리의 매도인과 독일의 매수인간 기계매매에서 독일법원은 ‘각국의 법률적 전통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스위스의 한 판결에서는 물품검사기간 및 불일치 통지기간에 관하여 주목할만한 판시를 한 바 있다. 이태리 매도인과 스위스의 매수인은 의료기자재를 매매 사건에서, 스위스 법원은 ‘각국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물품검사기간은 물품인도 후 10일 이내로, 불일치 통지기간은 물품인도 후 1개월 이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매수인이 인도분 “수령 후 3개월 후에 물품의 불일치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인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물품 불일치의 통지기간은 통상 ‘1개월 정도’라고 생각해볼 수는 있으나, 이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독일의 한 판결에서는, 매수인은 ‘이전에 인도된 동종의 신발에 불일치가 있었다면, 당해 인도분에 유사한 불일치가 있음을 즉시 발견하여 불일치를 통지할 책임이 있다’며, 인도후 ‘16일후’에 불일치를 통지한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바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합리적인 기간’은 당해 ‘거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실의 문제’인 것이다. 불일치통지의 통지시기에 관한 세부적 요건 및 합리적인 시기에 관하여는, 하강헌, “CISG상의 불일치통지의무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1집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pp. 92~103 참조.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이 제39조(불일치통지)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sup>23)</sup> 하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악의’조항을 주장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sup>24)</sup>

## 2) 관련된 문제

이러한 선행적 이행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검사기간과 관련하여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궁금해진다. 또한 물품의 불일치를 매도인이 알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어떠한 정도의 불일치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둘째, 물품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불일치의 내용만 명세하고 손해액을 상세히 명세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손해액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대금감액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셋째, 품질불일치의 입증책임은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즉 제기한 불일치 내용을 입증하는 거증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넷째,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불일치통지는 언제까지 이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또한 그 시기가 경과된 후라면,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해진다.

## 2. 관련사례

### 1) 물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sup>25)</sup>

#### (1) 사건개요

독일의 매수인은 이탈리아의 매도인에게 캐시미어 스웨터를 주문하고 물품을 인

23) 가령, 포도주에 물을 타서 계약과 불일치한 물품을 인도한 매도인은 설혹 매수인의 불일치통지가 지체되었다 할지라도 매수인의 그러한 구체권리를 부인할 수는 없다(오원석역, UN 통일매매법(제2판), 삼성사, 2004, p. 361).

24) CISG에서의 동 조항은 매수인에게 관대한 편이긴 하지만, 쉬운 일은 결코 아니므로, 매수인은 물품검사 및 불일치통지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매도인의 악의가 있었음을 매수인이 입증’해야만 하며, 독일상법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를 ‘교묘하게(의도적으로) 감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Enderlein, F & Maskow, D., *International Sales Law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Oceana Publications, 1992, pp. 163~164).

25) CLOUT Case 232 : Germany : Oberlandesgericht München ; 7 U 4427/97, 11 March 1998 : A/CN.9/SER.C/ABSTRACTS/20.

도받았지만, “스웨터의 품질에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금감액을 요구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독일법원에 제기하였다.

## (2) 판결내용

독일법원은 본 사건에서 계약의 일부로 ‘인용삽입’한 ‘독일의 섬유 및 의류산업의 표준조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2주간의 검사기간 및 CISG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검사 기간내에도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매수인은 본 계약에 대한 계약해제나 대금감액 등 물품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물품검사조항(제38조)을 원용할 수 없다(제40조)”라고 판결하였다. 심리도중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물품검사의무조항(제38조)을 원용할 수 없다(제40조)”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스웨터에 있는 불일치는 보통의 주의로써는 찾아내기 힘든 정도였으므로,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매수인이 자신의 고객에게 ‘판매를 한 사실’을 보더라도, 사용불가능하거나 판매 불가능한 물품이 아니었던 바, ‘매도인의 악의’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 (3) 판결의의

매수인은 물품수령후 반드시 물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물품을 검사하지 않고 그 불일치 명세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본 사건에서와 같이 ‘매도인의 악의’의 조항을 적용시키고자 주장할 수도 있지만, 매도인의 악의를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한 일이다. 섬유 및 의류에 있어, 독일에서는 ‘2주간의 검사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도인의 육안으로도 찾아내기 힘든 정도의 물품불일치로써 ‘매도인의 악의’의 조항에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2) 매수인이 손해액을 명세하는데 실패한 경우<sup>26)</sup>

### (1) 사건개요

프랑스의 매도인은 음향기기 모듈 5,000대를 스위스의 매수인에게 판매, 인도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음향에 울림이 있고 또 볼륨조정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매도인은 스위스법원에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매수인은 이에 대해 “물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액과 물품대금을 상계해야한다”라고 반소하였다.

26) CLOUT Case 938 : Switzerland : Kantonsgericht des Kantons Zug (Cantonal Court of the Canton of Zug) A3 2006 79, 30 August 2007 : A/CN.9/SER.C/ABSTRACTS/93.

(2) 판결내용

스위스법원은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액을 충분히 상세하게 명세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라고 밝히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대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3) 판결의의

대금감액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감액하고자 하는 ‘손해액을 입증’하고 그 내용을 매도인에게 상세히 통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품질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sup>27)</sup>**

(1) 사건개요

독일의 매수인은 헝가리의 매도인으로부터 헝가리산 밀을 FOB 부다페스트 인도조건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2001년 10월 16일에 체결하였다. 매수인의 운송인은 10월 19일과 25일에 각각 헝가리산 밀을 인수받았다. 하지만 매수인은 11월 14일에 ‘밀에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빨강곰팡이균도 있는 등 품질불일치가 있음’을 매도인에게 통지하면서 대금감액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매도인은 ‘이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을 지체하여 생긴 품질불일치’라고 주장하면서 대금감액요구를 거절하고, 독일의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독일법원에 제기하였다.

(2) 판결내용

독일고등법원은 본 사건에서 물품불일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매수인은 불평만 하였을 뿐, “밀이 납과 곰팡이균에 감염되었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으므로, 물품에 대한 대금감액권을 갖지 못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대금과 그 이자 및 보관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3) 판결의의

수령한 물품의 품질불일치를 사유로 하여 물품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반드시 적법한 기한내에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불일치 내용을 명세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품질에 대한 불평만 말하고 ‘그 불일치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27) CLOUT Case 721 : Germany : Oberlandesgericht Karlsruhe 7 U 101/04, 08 February 2006 : A/CN.9/SER.C/ABSTRACTS/68.

#### 4) 불일치통지시기를 경과한 경우<sup>28)</sup>

##### (1) 사건개요

매수인은 냉온수 식수장비 184개를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그 중 한 장비가 1997년 1월초 조작상의 문제를 일으켰으나, 자체 수리하여 사용하였다. 매도인에게는 ‘장비중 하나에 하자있음’이라는 단문의 팩스를 송부하였다. 그 후 1997년 가을 및 1998년 5월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다. 이 때에도 불일치에 관한 명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스페인법원은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불일치통지를 이행하는데 실패하였으므로, 매수인은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 (3) 판결의의

대금감액권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물품검사’를 실시한 후, 그 ‘불일치를 명세’하여 ‘합리적인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불일치에 의존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할 것이다.

## IV. 다른 구제권과의 관계 및 관련사례

### 1. 매도인의 구제권과 관련된 문제

매도인이 자신의 어떠한 불이행을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물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제50조 제2문에서는 “매도인이 제37조(인도기일전의 보완권) 또는 제48조(인도기일후의 보완권)에 따라 그 의무의 어떠한 불이행을 보완 ……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이 매수인의 대금감액권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이 하자보완권<sup>29)</sup>을 행사하여 그 물품의 불일치를 완전히 치

28) CLOUT Case 397 : Spain : Audiencia Provincial de Pamplona, Division 3, 27 March 2000, EMC v. C de AB SL : A/CN.9/SER.C/ABSTRACTS/35.

29)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하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하자보완권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9, pp. 263~264 참조.

유해내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감액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sup>30)</sup> 다만, 그로 인한 결과적 손해 등 여타의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용할 수가 있다.

## 2. 매수인의 구제권과 관련된 문제

### 1)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자신의 계약해제권(제49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지급거절 선언을 한 경우 동 선언이 대금감액권 행사로 인정되는지, 즉 대금지급거절 선언이 ‘물품가액을 제로’로 하는 ‘대금감액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진다.

### 2) 매수인의 재매각권

물품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경감의무의 이행차원에서라도 물품을 재매각할 필요가 있다.<sup>31)</sup> 이러한 재매각 가격은 대금의 감액을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재매각후에도 대금감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진다. 매수인이 재매각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매각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sup>32)</sup>

---

30) 매도인이 새로운 대체품을 인도하였고, 그 대체품이 계약에 일치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를 사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

31) 매수인의 물품재매각의무에 관해서는 하강현, “CISG상의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pp. 14~17 참조.

32)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재매각권’은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스스로를 위해 매각’(self-help-sale)하는 것이다.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반송해 가는데 불합리한 지체가 예상되거나, 매수인이 물품을 보관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고 그 물품을 재매각할 수 있다(Honnold J.O., (Edited and Undated by Flechtner H.M.),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pp. 1164~1166).

### 3. 관련사례

#### 1) 매도인의 하자보완(대체품인도) 제의를 거부한 경우<sup>33)</sup>

##### (1) 사건개요

네덜란드의 매도인은 독일의 매수인에게 아크릴 담요를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은 “물품의 품질이 불량하고 수량도 5킬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불일치 통지문에는 부족한 담요가 어떠한 담요인지 명세되어 있지도 않았고, 품질불량에 대한 명세도 없었다. 그럼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새로운 담요를 인도하겠다’고 제의하였다. 하지만 매수인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8주후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다.

#####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독일법원은 “매도인의 ‘새로운 담요를 인도하겠다’는 제의를 매수인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물품대금감액권도 상실한다”라고 판결하였다.

##### (3)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의 품질위반은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상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체품을 인도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러한 매도인의 대체품인도를 매수인이 거부한 것은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sup>34)</sup> 매도인이 ‘대체품 인도나 수리보완’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특별히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제의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3) CLOUT Case 282 : Germany : Oberlandesgericht Koblenz ; 2 U 31/96, 31 January 1997 : A/CN.9/SER.C/ABSTRACTS/26.

34) 매도인이 대체품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요구하다 패소한 사례 참조. CLOUT Case 432 : Germany : Landgericht Stendal ; 22 S 234/99 , 12 October 2000 : A/CN.9/SER.C/ABSTRACTS/37.

## 2) 부당한 계약해제선언과 대금감액을 함께 요구한 경우<sup>35)</sup>

### (1) 사건개요

독일의 매도인은 스위스의 매수인에게 섬유세척기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은 ‘세척기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면서, 선택적으로 ‘대금감액을 함께 청구’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스위스의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스위스법원에 제기하였다.

### (2) 판결내용

스위스법원은 본 사건에서의 물품의 불일치는 ‘수리가 가능한 단 하나의 하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주일간의 물품검사기간이나 1개월 후 통지한 불일치통지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리가 가능한 단 하나의 하자만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선택적으로 함께 제기한 대금감액청구도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 (3) 판결의의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함께 행사한 대금감액권도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sup>36)</sup> 본 사건에서는 ‘위낙 사소한 하자를 사유’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대금감액권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물론 계약해제권과 대금감액권이 중복적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본 사건에서의 매수인은 수리를 한 후, 매도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어야 했다,

## 3) 대금지급거절이 대금감액 청구로 인정된 경우<sup>37)</sup>

### (1) 사건개요

오스트리아법원의 한 판례를 살펴보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커피제조기계를 구매하여 자신의 고객에게 재판매하였지만, 동 기계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수차례 수리를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태의 동 기계는 ‘상업적 가치는

35) CLOUT Case 884 : Switzerland : Obergericht des Kantons Luzern (Higher Court of the Canton of Lucerne), 11 01/03, 12 May 2003 : A/CN.9/SER.C/ABSTRACTS/87.

36) 앞의 CLOUT Case 1,190 참조.

37) CLOUT Case 747 : Austria : Oberster Gerichtshof 3 Ob 193/04k, 23 May 2005 : A/CN.9/SER.C/ABSTRACTS/71.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하기에는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였기에,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거절 한다'라고 통지하였다.

## (2) 판결내용

쟁점은 대금지급거절 선언이 대금감액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해제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물품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금지급거절 선언은 물품의 '가격을 제로(the price to zero)로 감액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 선언을 인정하였다.

## (3) 판결의의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 선언은 묵시적 계약해제선언으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계약해제시기가 경과한 경우라면, 대금지급거절 선언은 '대금을 제로로 감액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8)</sup> 반대로, 물품의 잔존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금감액선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계약해제의 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거절 선언보다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sup>39)</sup>

## 4) 재매각후 대금감액을 요구한 경우<sup>40)</sup>

### (1) 사건개요

독일의 매수인은 스페인의 매도인으로부터 감자를 5회에 걸쳐 수입하였다. 그런데 수령한 감자가 '모양도 이상할 뿐 아니라 썩어 있어' 품질의 불일치가 있었다. 이에 매수인은 불일치의 성질을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최선의 가격으로 재매각'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하였다. 매수인은 재매각후 재매각 손실액 및 기타 비용을 대금에서 감액토록 요구하였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전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소를 독일법원에 제기하였다.

38) 앞의 CLOUT Case 724 참조.

39) '계약해제권 행사의 시기가 경과하였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감액의 의사(요구)'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LOUT Case 83 : Germany : Oberlandesgericht München ; 7 U 441/93, 2 March 1994 : A/CN.9/SER.C/ABSTRACTS/6. 즉 계약해제시기 경과후에도 대금감액권은 사용가능하다.

40) CLOUT Case 825 : Germany : Oberlandesgericht Köln ; 16 U 57/05, 14 August 2006 : A/CN.9/SER.C/ABSTRACTS/80.

(2) 판결내용

독일항소법원은 “24시간내에 매도인에게 불일치통지를 하고 매도인과 합의하에 재매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매도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3) 판결의의

재매각후 감액대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매각 손실액과 기타 비용을 합하여 대금에서 감액하면 된다. 매수인이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재매각 가격이 최선의 가격이 아니라면, 이는 매수인이 손해경감의무의 위반(제77조)이 될 가능성도 있다.<sup>41)</sup>

## IV. 요약 및 결어

국제물품매매법상의 대금감액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대금감액조항(제50조)과 관련해서는, 물품 ‘인도시’의 기준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매수인이 이용할 때”가 그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대금감액권의 행사는 물품대금의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대금이 기 지급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적법하게 불일치통지를 하였고, 제소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 사용에 있어 계약해제권 행사에서와 같은 특별한 시간적 제한은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인도시의 물품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대금감액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유의할 점은 물품자체의 손해를 회복함에 있어, 앞의 두 가지 권리를 중복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업중단 손해 등 결과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대금감액권은 물품자체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입안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대금감액의 비율을 계약체결시 별도로 약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당사자 계약자치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매수인은 ‘처음 대금감액시 알고 있었던 불일치’를 기초로 추가로 대금을 감

41) 손해경감의무를 피해당사자에게 부과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위반당사자인 ‘상대방의 비용으로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CISG는 ‘국제매매당사자들이 신의(good faith)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제8조 제1항)하에 이러한 투기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Schlechtriem P., Schweng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789).

액할 수는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금의 감액은 수리비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입안된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이 지출한 ‘수리비용’은 감액대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선행적 이행의무 및 타 구제권과 관련해서는, 매수인은 물품도착후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점,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불일치통지는 ‘불일치의 내용을 명세’하여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감액하는 손해액도 상세하게 명세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앞의 두 가지 선행적 의무를 불이행 또는 불완전하게 이행한 후에, ‘매도인의 악의’의 조항에 호소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아니하다.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 매수인의 대금감액권이 충돌하는 경우, 매도인의 보완권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대금감액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감액해 달라”), 계약해제선언의 시기가 경과한 후에도 대금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 선언은 ‘물품가액을 제로’로 하는 대금감액권의 행사로 인정 되는 점, 매수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 동 가격은 대금감액의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수인은 반드시 재매각 계획을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가능하면 그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이 국제물품매매법상의 물품대금의 감액권 조항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이외에도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때에는, 선행적 이행의무 조항이나 다른 조항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매매 당사자들은 평소에 이들 조항을 포함하여, 본 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본 법과 관련된 사례를 평소에 숙지해 두는 것도 거래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금감액권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향후 계속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진우, “국제물품거래에서의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50조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8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9.
- 송수련, “CISG상 손해배상과 대금감액의 관계에 관한 중국 CIETAC의 중재사례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이수빈, “UN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매수인의 대금감액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 최명국, “CISG에서의 피해당사자의 구제방안 선택문제 :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1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9.
- 하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하자보완권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9.
- 하강현, “CISG상의 불일치통지의무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1집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 \_\_\_\_\_, “CISG상의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제66권, 2015.
- 오원석역, UN통일매매법(제2판), 삼영사, 2004.
- 한국민법
- Bianca, C.M. & Bonell, M.J.,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e·Milan, 1987.
- Enderlein, F & Maskow, D., *International Sales Law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Oceana Publications, 1992.
- Flechtner H. M., Brand R. A., Walter M. S.,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Honnold J.O., (Edited and Undated vy Flechtner H.M),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 Kroll S., Mistelis L., Viscasillas P.P.,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Hart Publishing, 2011.
- Letterman G.G., *UNIDROIT's Rules in Practice : Standard International Contracts and*

Applicable Rul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Schlechtriem P., Schweng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Zeller B.,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coterms 201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ISG)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PICC)

Uniform Commercial Code

CLOUT [Case Law on UNCITRAL Texts] Cases

## ABSTRACT

### A Study on the Buyer's Right of Reducing the Price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ang-Hun HA

CISG Article 50 contains the remedy of price reduction but limits it if the seller has a right to cure.

Reduction of price presupposes that the seller delivers non-conforming goods, and that the buyer decides to accept them nevertheless.

The remedy of price reduction differs from all other remedies provided in CISG with regard to its effects and to the time-limits. As to the time-limits, unlike Articles 46 and 49, Article 50 does not contain the element within a reasonable time. CISG imposes no period of time for his reducing the price.

The buyer's right to declare a reduction of the price is expressly subject to the seller's right to remedy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 pursuant to Articles 37 and 48.

The problem lies in determining from where to take the figures for comparing the value of the goods contracted and of those delivered.

The price level in this place will usually determine his considerations as to resale or repair of the defective goods.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Key words : Reduction of the Price, Examination of the Goods,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Seller's Cure Rights, Same Proportion as the Value, Non-Conforming Goods